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-30호

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3(과태료의 징수유예 등)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07월 15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1. 07. 15. ~ 2021. 07. 29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황철순	1972. 06. 05.	0178210274100001960	₩5,500,000	경기도 여주시 세종로
2	황철순	1972. 06. 05.	0178210274100001961	₩13,860,000	경기도 여주시 세종로
3	정광영	1981. 02. 26.	0178210274100001954	₩4,620,000	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중앙로
4	정광영	1981. 02. 26.	0178210274100001955	₩3,834,000	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중앙로
5	정광영	1981. 02. 26.	0178200274100006095	₩26,700,000	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중앙로
6	임준규	1974. 02. 22.	0178210274100001952	₩7,260,000	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 2 길
7	임준규	1974. 02. 22.	0178200274100000507	₩4,914,000	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 2 길
8	(주)트리샤	280211-0110***	0178210274100001951	₩3,000,000	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아랫용상 2 길
9	김종필	1966. 03. 26.	0178210274100001956	₩3,010,000	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
10	김종필	1966. 03. 26.	0178200274100003369	₩112,250	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
11	류종성	1973. 10. 15.	0178210274100001950	₩1,680,000	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길
12	유영자	1975. 04. 10.	0178210274100001946	₩4,6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 길
13	유영자	1975. 04. 10.	0178210274100001949	₩3,85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 길
14	박태남	1957. 12. 06.	0178210274100001947	₩20,520,000	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입고로
15	박태남	1957. 12. 06.	0178210274100001948	₩1,296,000	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입고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채납자 주소
16	김선호	1964. 10. 04.	0178210274100001964	₩2,000,000	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19 번길
17	박언조	1974. 05.10.	0178210274100001969	₩12,600,000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 1 길
18	박우람	1984. 06. 01.	0178210274100001970	₩4,700,000	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1 나길
19	박우람	1984. 06. 01.	0178200274100000603	₩3,834,000	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1 나길
20	제이앤에이네트웍스	110111-5502***	0178210274100001975	₩1,45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
21	제이앤에이네트웍스	110111-5502***	0178200274100000536	₩112,500	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
22	조범형	1979. 12. 23	0178210274100001965	₩3,50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
23	조범형	1979. 12. 23	0178210274100001966	₩85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분할납부금 채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채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채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